

ESG 위원회 규정

2023. 06. 30



제 1 조 【목 적】

- ① 본 규정은 ESG 경영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피료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【구 성】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임기 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3 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안건 및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하고, 위원장이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【소 집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과 정당한 사유를 밝혀 위원회를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【결의방법】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 조 【기능 및 권한】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 1. ESG 전략방향성 제시
 2. ESG 관점 Risk 관리
 3. ESG 성과 점검
 4. 기타 ESG 관련 Issue
- ② 위원회는 이사회 부의 안건 중 ESG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해당 안건 소관 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.

제 7조 【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】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, 외부인사 등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ESG 관련 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,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. 보안 교육 및 보안 준수 서약서 등 필요한 조치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서약서로 갈음한다.

제 8 조 【간사조직】

-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ESG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한다.
-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, 이를 담당할 구성원을 지정한다.
- ③ 이사회사무국은 위원회 일정 관리 및 소집통보, 회의 진행, 제반 문서 관리 등 위원회 행정 전반을 지원하며, 간사 조직과의 Coordination 을 담당한다.

제 9 조 【의사록】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0 조 【규정의 개정】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23. 07. 01)

제 1 조 【시행일】

본 ESG 위원회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